

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9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. 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연수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방범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 및 표창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 발췌

-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 제2조

예산수반사항 : 20,000천원 (2008년 본예산 확보)

- 방범기동대 연수 : 20,000원 × 1,000명 = 20,000천원

사전예고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8. 4. 22. ~ 2008. 5. 2.(1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방침(2008. 4. 8.)

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사기진작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

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·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을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과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과 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민 화 식
	담 당 직위·성명	자치행정담당 변 한 식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형 숙 (행정 3446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4조 (생략) <u>< 신 설 ></u>	제1조 ~ 제4조 (현행과 같음) 제4조의2(사기진작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·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을 표창 할 수 있다.
제5조 ~ 제7조 (생략)	제5조 ~ 제7조 (현행과 같음)